
2021회계연도 가평군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가 평 군 수

2022. 4. 22.

2021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2022년 4월 4일 ~ 4월 22일(19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이 상 현(대표위원)
- 검 사 위 원: 신 명 철(위원)
- 검 사 위 원: 유 근 웅(위원)
- 검 사 위 원: 정 진 환(위원)
- 검 사 위 원: 홍 인 수(위원)

가평군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건 서

가평군수 귀하

2022년 4월 2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로부터 가평군 202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19일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1회계연도 가평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가평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가평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서(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이 상 현

위 원 신 명 철

위 원 유 근 웅

위 원 정 진 환

위 원 홍 인 수



목 차

I .	결산검사 경과	1
-----	---------	---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2
------	-----------	---

①	가평군 재정여건	2
②	세입·세출 결산	5
③	기금의 결산	16
④	재무제표의 결산	17
⑤	성과보고서	19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0

III .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3
-------	----------------	----

IV .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57
------	-------------------------	----

1. 결산검사의 방향

-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행정안전부)을 근거로 작성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 2021회계연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점검하여 의회승인으로 확정된 세출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 내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결산검사 기간: 2022. 4. 4. ~ 4. 22.(19일간)

3.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이 상 현	결산총괄, 결산개요	
위 원	신 명 철	세입결산, 금고의 결산	
위 원	유 근 웅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위 원	정 진 환	세출결산, 결산서첨부서류	
위 원	홍 인 수	특별회계, 기금결산	

4. 결산검사 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기금결산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결산

5. 결산검사 진행

- 세입·세출결산서 위주로 검사
-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제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을 열람
- 결산검사 중 의문사항은 서류제출 요구
- 쟁점사항은 위원의 협의를 거쳐 조정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① 가평군 재정여건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의 수입지출 포함)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세 입	682,929,297	700,171,025	745,248,820	850,459,695	1,005,289,038
	세 출	462,964,521	494,005,447	505,977,966	588,977,761	725,237,062
	결산상잉여금	219,964,776	206,165,578	239,270,854	261,481,934	280,051,976
일반회계	세 입	528,840,210	559,162,177	606,284,479	673,377,880	746,640,363
	세 출	369,414,872	422,511,551	440,919,993	500,851,034	627,701,848
	결산상잉여금	159,425,338	136,650,626	165,364,486	172,526,846	118,938,515
특별회계	세 입	95,658,857	93,336,797	85,557,749	101,808,504	109,516,175
	세 출	78,179,704	70,595,469	62,396,588	74,314,921	87,723,752
	결산상잉여금	17,479,153	22,741,328	23,161,161	27,493,583	21,792,423
기 금	세 입	58,430,230	47,672,051	53,406,592	75,273,311	149,132,500
	세 출	15,369,945	898,427	2,661,385	13,811,806	9,811,462
	결산상잉여금	43,060,285	46,773,624	50,745,207	61,461,505	139,321,038

- 2021회계연도 재정규모는 1,005,289,038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대비 154,829,343천원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의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1,463천원이다.

※ 기금의 결산상잉여금은 예탁금(여유자금을 예탁하는 내부거래) 38,979,998천원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예탁금을 제외한 결산상잉여금은 100,341,040천원임.

※ 현년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공채발행, 차입, 채무상환, 전년도 이월금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 가평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합 계	17,200,000	16,381,250	14,247,150	11,603,970	8,960,790	
일반회계	17,200,000	16,381,250	14,247,150	11,603,970	8,960,790	
공채	-	-	-	-	-	
차입금	17,200,000	16,381,250	14,247,150	11,603,970	8,960,790	
채무부담행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가평군 채무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채무를 주민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채무’는 142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보다 44천원이 감소하였다.

2. 재정건전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 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판 단 기 준		가 평 군 지 표
			주의	심각(위기)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잔액}}{\text{총예산}}$	25% 초과	40% 초과	1.08%
	② 채무상환 부담률	$\frac{\text{지방채무상환액}}{\text{일반재원}}$	12% 초과	17% 초과	0.4%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월별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 징수액}}$	80% 미만	70% 미만	106.1%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해당연도 평균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 미만	10% 미만	105.94%
공 기 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채}}{\text{순자산}}$	400% 초과	600% 초과	0.42%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상수도) 0.7% (하수도) 0.03%

- 가평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8%, 채무상환 부담률은 0.4%, 지방세 징수액 현황은 106.1%, 금고잔액 현황 105.94%, 공기업 부채비율은 0.42%로서 가평군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21년도 본예산 기준)

$$- \text{재정자립도} = 18.52 \%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지방세: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 재정자립도는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17.86%)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text{재정자주도} = 66.52\%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 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55.22%) 보다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잉여금(A-B)	비고
합계		865,574,201	856,156,538	715,425,600	140,730,938	
일반회계		758,205,742	746,640,363	627,701,848	118,938,515	
특별회계		107,368,459	109,516,175	87,723,752	21,792,423	
	공기업특별회계	81,213,351	83,577,266	65,320,841	18,256,425	
	기타특별회계	26,155,108	25,938,909	22,402,911	3,535,998	

구분	현년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비고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	34,810,437 (506,000)	27,017,406	32,412,082	9,063,188	37,427,825	
일반회계	—	30,549,695 (506,000)	25,512,486	32,412,082	8,799,004	21,665,247	
특별회계	—	4,260,742	1,504,920	—	264,184	15,762,578	
	공기업특별회계	—	2,108,338	1,049,480	—	15,098,608	
	기타특별회계	—	2,152,404	455,440	—	663,970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표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56,156,538천 원으로 예산현액 865,574,201천 원보다 9,417,663천 원이 덜 수납되었다.
-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인 715,425,600천 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0,730,938천 원이다. 이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 34,810,437천 원, 사고이월 27,017,406천 원, 계속비이월 32,412,082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9,063,188천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427,825천 원이다.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현년도 채무상환액은 없다.

- 명시·사고 및 계속비 이월과 자금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1) 세입결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 예산현액 865,574,20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6,156,539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징수결정액 869,720,575천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4%이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다/가	다/나
합 계	865,574,201	869,720,575	856,156,539	1,916,822	11,647,215	98.9	98.4
전년도	760,922,335	789,735,003	775,186,384	3,092,486	11,456,133	101.9	98.2
일반회계	758,205,742	759,022,404	746,640,363	1,916,822	10,465,220	98.5	98.4
전년도	660,823,154	687,173,653	673,377,880	3,092,486	10,703,287	101.9	98.0
특별회계	107,368,459	110,698,171	109,516,176	—	1,181,995	102.0	98.9
전년도	100,099,181	102,561,350	101,808,504	—	752,846	101.7	99.3

- 실제수납액은 전년대비 80,970,155천원(10.5%)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1,175,664천원(38%)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91,082천원(1.7%) 증가하였다.

2) 세출결산

-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예산액은 730,055,274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35,518,927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65,574,201천원이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715,425,600천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의 11%인 94,239,925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46,229,427천원이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비고
합 계	865,574,201	715,425,600	94,239,925	46,229,427	
전년도	760,922,335	575,165,955	135,518,927	50,237,453	
일반회계	758,205,742	627,701,848	88,474,263	32,666,066	
전년도	660,823,154	500,851,034	122,472,401	37,499,719	
특별회계	107,368,459	87,723,752	5,765,662	13,563,361	
전년도	100,099,181	74,314,921	13,046,526	12,737,734	

2. 일반회계

1) 세입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처분 등)	미수납액 (다음연도이월액)	비 중 (수납액 기준 %)
합 계	758,205,742	759,022,404	746,640,362	1,916,822	10,465,220	100
전년도	660,823,154	687,173,653	673,377,880	3,092,486	10,703,287	100
지방세수입	63,476,000	71,416,545	64,395,669	1,596,991	5,423,885	8.6
전년도	56,993,300	69,926,147	61,238,068	2,358,149	6,329,930	9.1
세 외 수 입	33,311,439	42,446,776	37,085,610	319,831	5,041,335	5.0
전년도	21,611,817	28,832,920	23,725,226	734,337	4,373,357	3.5
지방교부세	162,507,713	159,251,033	159,251,033	-	-	21.3
전년도	140,987,000	142,128,122	142,128,122	-	-	21.1
조정교부금등	138,177,519	126,163,828	126,163,828	-	-	16.9
전년도	76,345,000	84,946,109	84,946,109	-	-	12.6
보 조 금	169,457,560	168,856,249	168,856,249	-	-	22.6
전년도	196,410,589	192,022,957	192,022,957	-	-	2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1,275,511	190,887,973	190,887,973	-	-	25.6
전년도	168,475,448	169,317,398	169,317,398	-	-	25.2
결 산 확 인 액	758,205,742	759,022,404	746,640,362	1,916,822	10,465,220	
차 액	-	-	-	-	-	

- 예산현액은 758,205,742천원으로 전년대비 97,382,588천원(14.7%)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은 759,022,404천원으로 전년대비 71,848,751천원(10.5%)증가하였다.
-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73,262,482천원 많은 746,640,362천원(10.9%)이 수납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37,085,610천원(56.3%), 조정교부금등 126,163,828천원 (48.5%), 지방교부세 159,251,033천원(12.0%) 등이다.
-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총 수납액 746,640,362천원 중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를 제외하고 보조금 22.6%, 지방교부세 21.3%, 조정교부금 등 16.9%, 지방세수입 8.6%, 세외수입 5.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 불납결손액은 1,916,822천원으로 주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969,898천원 (50.6%), 평가액 부족 677,635천원(35.4%), 행방불명 243,928천원(12.7%) 등이다.

○ 세목별 세입결산액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758,205,742	759,022,404	746,640,362	1,916,822	10,465,220
지 방 세	소 계	63,476,000	71,416,545	64,395,669	1,596,991	5,423,885
	주 민 세	1,400,000	1,528,082	1,463,239	—	64,843
	채 산 세	25,750,000	26,957,605	26,204,909	—	752,696
	자 동 차 세	9,200,000	9,279,175	8,567,874	—	711,301
	담 배 소 비 세	7,300,000	7,280,442	7,280,442	—	—
	지 방 소 비 세	4,026,000	4,040,383	4,040,383	—	—
	지 방 소 득 세	14,000,000	15,910,072	15,116,347	—	793,725
	지 난 년 도 수 입	1,800,000	6,420,786	1,722,475	1,596,991	3,101,320
세 외 수 입	소 계	33,311,439	42,446,776	37,085,610	319,831	5,041,335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0,360,851	12,485,732	12,409,410	46	76,276
	재 산 입 대 수 입	420,286	515,616	476,417	—	39,199
	사 용 료 수 입	2,770,773	3,763,333	3,731,135	46	32,152
	수 수 료 수 입	2,819,379	2,769,394	2,764,946	—	4,448
	사 업 수 입	74,000	79,720	79,720	—	—
	징 수 교 부 금 수 입	2,397,330	3,476,048	3,476,048	—	—
	이 자 수 입	1,879,083	1,881,621	1,881,144	—	47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1,559,888	27,984,520	23,353,184	319,764	4,311,572
	재 산 매 각 수 입	4,053,266	4,962,773	4,190,905	—	771,868
	자 차 단 채 간 부 담 금	748	748	748	—	—
	보 조 금 반 환 수 입	1,731,994	2,634,077	2,632,429	—	1,648
	기 타 수 입	14,950,070	16,146,888	15,535,172	1,596	610,120
	지 난 연 도 수 입	823,810	4,240,034	993,930	318,168	2,927,936
	지 방 행 정 제 제 · 부 과 금	1,390,700	1,976,524	1,323,016	21	653,487
	과 징 금	69,489	65,741	39,757	—	25,984
	이 행 강 제 금	297,400	482,694	334,472	—	148,222
	변 상 금	53,509	114,006	87,793	—	26,213
	과 태 료	560,302	497,590	391,791	21	105,778
	부 담 금	410,000	816,493	469,203	—	347,290
지 방 교 부 세		162,507,713	159,251,033	159,251,033	—	—
조 정 교 부 금 등		138,177,519	126,163,828	126,163,828	—	—
보 조 금		169,457,560	168,856,249	168,856,249	—	—
국 비 보 조 금		126,373,058	126,282,782	126,282,782	—	—
도 비 보 조 금		43,084,502	42,573,467	42,573,467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부 거래		191,275,511	190,887,973	190,887,973	—	—

○ 지난년도 대비 세목별 세입결산액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목별 세입(수납액) 증감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2021년	2020년	증감액	증감율 (%)	비고
세목별						
합	계	746,640,362	673,377,880	73,262,482	10.9	
지 방 세	계	64,395,669	61,238,068	3,157,601	5.2	
	주 민 세	1,463,239	1,350,980	112,259	8.3	
	재 산 세	26,204,909	24,491,604	1,713,305	7.0	
	자 동 차 세	8,567,874	9,613,995	△1,046,121	△10.9	
	담 배 소 비 세	7,280,442	7,206,317	74,125	1.0	
	지 방 소 비 세	4,040,383	3,893,300	147,083	3.8	
	지 방 소 득 세	15,116,347	13,966,474	1,149,873	8.2	
	지 난 년 도 수 입	1,722,475	715,398	1,007,077	140.8	
세 외 수 입	계	37,085,610	23,725,226	13,360,384	56.3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2,409,410	10,587,506	1,821,904	17.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23,353,184	13,137,720	10,215,464	77.8	
	지방행정체제·부과금	1,323,016	-	1,323,016	-	
지 방 교 부 세		159,251,033	142,128,122	17,122,911	12.0	
조 정 교 부 금 등		126,163,828	84,946,109	41,217,719	48.5	
보 조 금 계		168,856,249	192,022,957	△23,166,708	△12.1	
	국 비 보 조 금	126,282,782	136,495,812	△10,213,030	△7.5	
	도 비 보 조 금	42,573,467	55,527,145	△12,953,678	△23.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0,887,973	169,317,398	21,570,575	12.7	

- 지방세는 안정적 세목구조(재산세 등), 신축 건축물 등 과세대상 증가 및 공시가격(개별·공동주택가격 등) 현실화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 정부의 유류세(주행세, 교육세 등) 20% 인하조치는 자동차세(주행분)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0억 원 감소하였다.
- 지난년도 수입은 2019~2020년 골프장 원형보전지 심판청구(조세심판원 결정서 반영) 인용결정에 따라 2020년 재산세(토지) 과년도 환급액이 많았기에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 비율이 140.8% 상승하였다.
- 세외수입은 꽃 정원 개방으로 인한 입장료 수입(5억) 증가, 공공시설 등 사용료 수입(17억) 증가,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35억) 증가, 전년도 도세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8억) 증가 등 전년대비 56.3% 증가하였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79,210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를 현물(토지)로 징수한 것에 대한 차액이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액	차 액	사 유
일 반 회 계	746,640,362	746,561,152	79,210	지방세 현물(토지) 징수 ※ 공유재산 증가

2) 세출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율% (나/가)	비고
2021년	635,733,341	758,205,742	627,701,848	88,980,263	32,666,066	82.8	
2020년	566,323,380	660,823,154	500,851,034	122,472,401	37,499,719	75.8	
증감액 (%)	69,409,961 (12.3)	97,382,588 (14.7)	126,850,814 (25.3)	△33,492,138 (△27.3)	△4,833,653 (△12.9)		
결산확인액							
차 액	—	—	—	—	—	—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635,733,34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472,40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58,205,742천원이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8%인 627,701,848천원이고 88,980,263천원(예산현액 대비 11.7%)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66,066천원(예산현액 대비 4.3%)으로 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전년대비 4,833,653천원(12.9%) 감소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액	차 액	비고
일 반 회 계	627,701,848	627,701,848	—	

○ 일반회계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이월내역】

(단위: 천원, 건, %)

구 분	2021년(A)		2020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181	88,980,263	251	122,472,401	△70	△33,492,138	△27.3
명 시 이 월	62	31,055,695	121	55,921,278	△59	△24,865,583	△44.5
사 고 이 월	86	25,512,486	57	9,498,366	29	16,014,120	168.6
계속비이월	33	32,412,082	73	57,052,757	△40	△24,640,675	△43.2

- 총 이월사업비는 181건 88,980,263천원으로 명시이월 62건 31,055,695천원, 사고이월 86건 25,512,486천원, 계속비이월 33건 32,412,082천원으로 전년대비 27.3%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점유율	지출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58,205,742	627,701,848	82.8	100	500,851,034	126,850,814	25.3
일 반 공 공 행 정	121,046,227	111,634,017	92.2	17.8	36,573,025	75,060,992	205.2
공공질서 및 안전	19,610,638	17,424,219	88.9	2.8	32,617,132	△15,192,913	△46.6
교 육	9,168,448	7,812,869	85.2	1.2	5,852,197	1,960,672	33.5
문 화 및 관 광	91,621,698	53,119,641	58.0	8.5	42,681,009	10,438,632	24.5
환 경 보 호	48,434,447	40,440,105	83.5	6.4	38,225,795	2,214,310	5.8
사 회 복 지	158,065,485	149,459,487	94.6	23.8	133,656,678	15,802,809	11.8
보 건	8,513,817	7,570,164	88.9	1.2	7,738,128	△167,964	△2.2
농 립 해 양 수 산	69,328,366	62,767,262	90.5	10.0	48,632,423	14,134,839	2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012,787	24,281,468	97.1	3.9	13,899,357	10,382,111	74.7
교 통 및 물 류	38,503,002	28,351,428	73.6	4.5	26,294,981	2,056,447	7.8
국토및지역개발	93,831,271	60,713,500	64.7	9.7	53,426,625	7,286,875	13.6
예 비 비	5,262,122	-	-	-	-	-	-
기 타	69,807,434	64,127,688	91.9	10.2	61,253,684	2,874,004	4.7

-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 149,459,487천원(23.8%), 일반공공행정 111,634,017천원(17.8%), 기타 64,127,688천원(10.2%)등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05.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74.7%), 농림해양수산(29.1%) 등이다.

3.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결산

1) 세입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입 결산액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미수납액
합	계	107,368,459	110,698,171	109,516,176	—	1,181,995
	전 년 도	98,304,181	100,777,058	100,024,213	—	752,845
공 기 업 기 타	소 계 (2)	81,213,351	83,975,765	83,577,267	—	398,498
	전 년 도	68,923,074	71,059,864	70,671,126	—	388,7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458,309	34,904,987	34,696,399	—	208,588
	전 년 도	30,267,443	31,587,553	31,397,055	—	190,4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755,042	49,070,778	48,880,868	—	189,910
	전 년 도	38,655,631	39,472,311	39,274,071	—	198,240
	소 계 (4)	26,155,108	26,722,406	25,938,909	—	783,497
	전 년 도	29,381,107	29,717,194	29,353,087	—	364,107
	의 료 기 금	1,183,635	1,198,046	1,190,193	—	7,853
	전 년 도	1,098,604	1,096,745	1,096,745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주 차 장 수 질 개 선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297,015	1,271,014	1,271,014	—	—
	전 년 도	1,332,357	1,282,344	1,282,344	—	—
	주 차 장	4,471,061	4,591,491	4,224,546	—	366,945
	전 년 도	5,680,902	6,067,647	5,703,540	—	364,107
	수 질 개 선	19,203,397	19,661,855	19,253,156	—	408,699
	전 년 도	21,269,244	21,270,458	21,270,458	—	—
	결 산 확 인 액	107,368,459	110,698,171	109,516,176	—	1,181,995
	차 액	—	—	—	—	—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2020. 9. 23.)

-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9%로인 109,516,176천원으로 전년대비 9,491,963천원(9.5%)이 증가하였다.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429,150천원(57%)가 증가한 1,181,995천원으로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의 납기일 미도래, 상·하수도 요금, 불법주정차과태료의 미수납액으로 납세자의 납세태만 등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과 금고출납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액 669,809천원이 발생하였다.

- 그 원인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출납사무 완결기한(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에서 당해연도 12월에 수납되어 가평군 금고에 미입금된 당해연도 세입에 대한 차액이 각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8,58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1,223천원이 발생하였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 액	차 액	사 유
합	계	109,516,176	108,846,367	669,809	
	공기업특별회계	83,577,267	82,907,458	669,80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4,696,399	34,107,813	588,586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21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588,586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8,880,868	48,799,645	81,223	· 타 금융기관 수납세입 2021년 회계마감 후 금고 입금액: 81,223천원
	기타특별회계	25,938,909	25,938,909	—	

2) 세출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고, 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포함)
합	계	107,368,459	87,723,752	5,765,662	13,879,045
	전 년 도	98,304,181	72,530,630	13,046,526	12,727,025
공 기 업	소 계 (2)	81,213,351	65,320,841	3,157,818	12,734,692
	전 년 도	68,923,074	47,659,542	10,610,034	10,653,4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2,458,309	24,352,565	2,115,523	5,990,221
	전 년 도	30,267,443	16,656,744	7,909,076	5,701,6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755,042	40,968,276	1,042,295	6,744,471
	전 년 도	38,655,631	31,002,798	2,700,958	4,951,875
기 타	소 계 (4)	26,155,108	22,402,911	2,607,844	1,144,353
	전 년 도	29,381,107	24,871,088	2,436,492	2,073,527
	의 료 기 금	1,183,635	1,140,579	—	43,056
	전 년 도	1,098,604	1,037,790	—	60,814
	발 전 소 주 변 지 역	1,297,015	868,983	—	428,032
	전 년 도	1,332,357	554,197	—	778,160
	주 차 장	4,471,061	2,505,284	1,722,298	243,479
	전 년 도	5,680,902	4,725,018	516,488	439,396
	수 질 개 선	19,203,397	17,888,065	885,546	429,786
	전 년 도	21,269,244	18,554,083	1,920,004	795,157
결 산 확 인 액		107,368,459	87,723,752	5,765,662	13,879,045
차 액		—	—	—	—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폐지(2020. 9. 23.)

- 2021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7,368,45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7%인 87,723,752천원이 지출되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65,320,841천원(예산현액 대비 80.4%)을 지출하였고, 3,157,818천원(예산현액 대비 3.9%)은 이월하였으며, 12,734,692천원(예산현액 대비 15.7%)을 불용하였다.
-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2,402,911천원(예산현액대비 85.7%)을 지출하였고, 2,607,844천원(예산현액 대비 10%)은 이월하였으며, 1,144,353천원(예산현액 대비 4.4%)을 불용하였다.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과 금고출납계산서와의 차액은 없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비 고
특 별 회 계	87,723,752	87,723,752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5,320,841	65,320,841	-	
기 타 특 별 회 계	22,402,911	22,402,911	-	

○ 특별회계의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이월내역】

(단위 : 천원, 건, %)

구 분	2021년(A)		2020년(B)		차 액(C=A-B)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증감율
합 계	13	5,765,680	18	13,046,527	△5	△7,280,847	△55.8
명 시 이 월	7	4,260,742	11	7,439,788	△4	△3,179,046	△42.7
사 고 이 월	6	1,504,938	7	5,606,739	△1	△4,101,801	△73.2
계속비이월	-	-	-	-	-	-	-

- 총 이월사업비는 13건 5,765,680천원으로 명시이월 7건 4,260,742천원, 사고이월 6건 1,504,938천원으로 전년대비 55.8%가 감소하였다.

4. 예비비의 결산

○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예비비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일 반 회 계)		2,813,890	2,391,840	-	421,950
자치행정과	기 록 관 운 영	19,400	19,130	-	270
	공 명 선 거 관 리	307,351	18,465	-	288,886
안전재난과	국 민 지 원 금 지 급	63,261	30,298	-	32,963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100,000	99,986	-	14
축산유통과	CCTV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63,750	47,211	-	16,539
산 림 과	자 연 휴 양 림 관 리	7,000	6,327	-	673
	7.28~8.11 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지원)	600,000	600,000	-	-
건 설 과	도 로 정 비	487,000	487,000	-	-
	농어촌도로(상102호선) 확포장공사	395,188	395,188	-	-
환 경 과	멧돼지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	650,000	577,387	-	72,613
보 건 소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치 사업	100,000	90,007	-	3,371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군비)	20,940	20,841	-	6,621

- 202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개 사업 2,813,890천원으로 재해구호, 산림 피해 복구, 멧돼지 ASF 확산방지사업,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

③ 기금의 결산

○ 2021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 (A+B)
		증감액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6,606,215	92,714,824	102,526,285	9,811,461	139,321,0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189,406	89,449,497	98,119,282	8,669,785	108,638,903
청 사 건 립 기 금	-	1,000,014	1,000,014	-	1,000,014
사 회 복 지 기 금	7,195,248	77,422	127,801	50,379	7,272,670
문화예술발전기금	1,613,145	2,029	27,029	25,000	1,615,174
식 품 진 흥 기 금	126,096	△23,998	47,064	71,062	102,098
체 육 진 흥 기 금	1,058,505	207	18,207	18,000	1,058,712
장 학 기 금	14,106,182	1,756,345	1,953,021	196,676	15,862,527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54,646	43,094	115,096	72,001	297,741
재 난 관 리 기 금	1,293,590	579,921	1,008,833	428,913	1,873,510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40,040	10,089	17,589	7,500	1,050,129
옥외광고정비기금	729,357	△179,796	92,349	272,145	549,561

- 2021회계연도 말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46,606,215천원에 해당연도 조성액 92,714,824천원을 더하고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 9,811,461천원을 공제한 139,321,039천원이다.

※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폐지로 인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849,884천원 예탁 및 일반회계 그외수입으로 5,406천원 세입 조치함.

-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0.09.23.)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 폐지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51,796,487	43,060,285	46,773,623	50,745,207	46,606,215	△2.6
해당연도 조성액	6,633,743	4,611,765	6,632,969	24,528,104	102,526,285	98.3
해당연도 사용액	15,369,945	898,427	2,661,385	13,811,806	9,811,461	△10.6
해당연도말 조성액	43,060,285	46,773,623	50,745,207	61,461,505	139,321,039	34.1

4 재무제표의 결산

○ 가평군의 2021회계연도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366,944	2,252,193	114,751	5.1
I. 유 동 자 산	251,141	244,338	6,803	2.8
II. 투 자 자 산	9,295	4,806	4,489	93.4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40,737	139,102	1,635	1.2
IV. 주 민 편 의 시 설	451,683	404,761	46,922	11.6
V. 사 회 기 반 시 설	1,508,303	1,454,743	53,560	3.7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785	4,443	1,342	30.2
부 채	27,697	31,292	△3,595	△11.5
I. 유 동 부 채	16,240	18,108	△1,868	△10.3
II. 장 기 차 입 부 채	6,318	8,961	△2,643	△29.5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5,139	4,223	916	21.7
순 자 산	2,339,247	2,220,901	118,346	5.4
I. 고 정 순 자 산	2,096,288	1,991,185	105,103	5.3
II. 특 정 순 자 산	30,668	27,794	2,874	10.3
III. 일 반 순 자 산	212,291	201,922	10,369	5.1

- 2021회계연도 말 가평군의 자산은 2조 3,669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 2,522억 원보다 1,147억원(5.1%)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68억 원(2.8%), 투자자산 45억 원(93.4%), 일반유형자산 16억 원(1.2%), 주민편의시설 469억 원(11.6%), 사회기반시설 536억 원(3.7%), 기타비유동자산 13억 원(30.2%)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는 27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원(11.5%)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19억 원(10.3%) 및 장기차입부채 26억 원(29.5%) 감소하고, 기타비유동부채 9억 원(21.7%)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20,341	150,702	69,639	46.2
가. 사업총원가	405,304	362,794	42,510	11.7
나. 사업수익	184,963	212,092	△27,129	△12.8
II. 관리운영비	68,500	70,760	△2,260	△3.2
III. 비배분비용	19,462	20,566	△1,104	△5.4
IV. 비배분수익	21,632	17,242	4,390	25.5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86,671	224,786	61,885	27.5
VI. 일반수익	372,555	304,452	68,103	22.4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85,884	△79,666	△6,218	7.8

- 가평균의 2021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053억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849억 원을 차감한 2,203억 원이며, 총 11분야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분야는 “사회복지” (412억 원), “농림해양수산” (362억 원), “환경” (349억 원)이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64억 원과 경비 20억 원, 민간등이전비용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이자비용) 5억 원, 기타비용(자산처분손실,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등) 18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83억 원, 기타수익(전입금수익,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기타비배분수익 등) 33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1회계연도 가평균의 재정운영결과는 △859억 원으로 전년도의 △797억 원보다 62억 원(7.8%)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 23억 원(△3.2%), 비배분비용 11억 원(△5.4%) 감소한 반면, 비배분수익 44억 원(25.5%), 사업순원가 696억 원(46.2%)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5 **성과보고서**

- 가평군은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7개)-정책사업목표(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부 서 명	전 목 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27	86	138	14	96	28	79.7
기획감사담당관	1	4	6	—	5	1	83.3
자치행정과	1	3	4	—	4	—	100.0
안전재난과	1	4	4	1	2	1	75.0
회계과	1	2	2	—	2	—	100.0
세정과	1	1	4	—	1	3	25.0
민원지적과	1	2	4	—	3	1	75.0
복지정책과	1	6	6	1	4	1	83.3
행복돌봄과	1	4	7	2	5	—	100.0
일자리경제과	1	6	10	1	6	3	70.0
문화체육과	1	4	4	—	—	4	0.0
관광과	1	1	2	1	1	—	100.0
농업정책과	1	4	4	—	4	—	100.0
축산유통과	1	4	5	—	4	1	80.0
산림과	1	3	4	—	4	—	100.0
건설과	1	7	12	1	7	4	66.7
환경과	1	5	7	—	5	2	71.4
도시과	1	1	3	—	1	2	33.3
교통과	1	1	3	—	3	—	100.0
건축과	1	1	3	—	3	—	100.0
허가민원과	1	5	6	1	5	—	100.0
의회사무과	1	1	2	—	2	—	100.0
보건소	1	5	9	3	4	2	77.8
기술기획과	1	3	6	2	4	—	100.0
소득개발과	1	3	7	—	7	—	100.0
상수도사업소	1	1	3	—	3	—	100.0
하수도사업소	1	1	2	—	2	—	100.0
평생교육사업소	1	4	9	1	5	3	66.7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79.7%로 전년도 74.5%보다 5.2%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등이 달성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 성과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초과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⑥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 2021회계연도 채권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상환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3,613,993	206,759	239,751	3,581,001
일	반 회 계	3,244,996	181,667	167,907	3,258,75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10	-	-	1,210
	상 수 도 사 업	1,210	-	-	1,210
	하 수 도 사 업	-	-	-	-
기 타	특 별 회 계	227,000	13,355	23,355	217,000
	의 료 급 여 기 금	-	-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227,000	13,355	23,355	217,000
	주 차 장	-	-	-	-
	수 질 개 선	-	-	-	-
기	금	140,787	11,737	48,489	104,035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	-	-	-
	청 사 건 립 기 금	-	-	-	-
	사 회 복 지 기 금	140,787	11,737	48,489	104,035
	문 화 예 술 발 전 기 금	-	-	-	-
	식 품 진 흥 기 금	-	-	-	-
	체 육 진 흥 기 금	-	-	-	-
	장 학 기 금	-	-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	-	-
	재 난 관 리 기 금	-	-	-	-
	농 업 인 단 체 육 성 기 금	-	-	-	-
	옥 외 광 고 정 비 기 금	-	-	-	-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581,001천원으로 일반회계 3,258,756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210천원, 기타특별회계 217,000천원, 기금 104,035천원이다.

2. 채무

○ 2021회계연도 채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합	계	11,603,970	-	2,643,180	-	8,960,790
일	반 회 계	11,603,970	-	2,643,180	-	8,960,79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	-	-	-
기	타 특 별 회 계	-	-	-	-	-
기	금	-	-	-	-	-

- 채무는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고 있으며,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2,643,180천원이 감소한 8,960,790천원이다.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채무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전년도이월액 기 준	8,960,790	8,960,790	-	-	-	-

※ 2022. 4. 11. 기준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

- 사업별 해당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부세 감액보전(2013. 12. 13./ 6,000백만원): 1,254,54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 6. 30./ 5,000백만원): 3,000,000천원
 - 청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 9. 20./ 2,000백만원): 1,125,000천원
 - 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 10. 26./ 1,000백만원): 593,750천원
 - 상천역세권기반시설조성(2016. 10. 26./ 2,000백만원): 1,187,500천원
 - 가평뮤직빌리지조성(2016. 12. 30./ 3,000백만원): 1,800,000천원

3. 공유재산

○ 2021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583,329,193	43,912,359	3,524,810	1,623,716,742
행정 재산	소 계	1,570,464,265	42,731,006	2,730,184	1,610,465,087
	공 용 재 산	322,966,004	6,715,390	499,699	329,181,695
	공 공 용 재 산	1,221,711,799	36,015,616	2,230,485	1,255,496,930
	기 업 용 재 산	24,409,091	-	-	24,409,091
	보 존 용 재 산	1,377,371	-	-	1,377,371
일	반 재 산	12,864,928	1,181,353	794,626	13,251,655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40,387,549천원이 증가한 1,623,716,742천원으로, 주요 증가된 내역은 토지 290억 원, 건물 34억 원, 공작물 79억 원 등이다.

4. 물품

○ 2021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건)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862	151	26	987
금 액	11,494,325	890,073	1,549,397	10,835,001

- 물품은 전년대비 659,324천원이 감소한 10,835,001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차량 9대 389,684천원 및 노트북 27대 114,207천원 취득 등이고, 차량 4대 106,456천원 및 향온향습기 10대 461,843천원 등의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다.

Ⅲ.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 번호	제 목	검사위원	해 당 부 서
1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 및 이월사업 확정 철저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교통과
2	예비비 과다 편성	이상현	건설과
3	자금 운용 소홀(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
4	폐지 기금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일반 회계 세입조치 소홀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문화체육과, 기술기획과
5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신명철	회계과 등 13개 부서
6	불요불급한 예산 외의 예산전용 자제	신명철	기획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
7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신명철	관광과 등 7개 부서
8	예비비 집행잔액 표기 불부합	유근웅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건설과
9	성과지표 달성률 미흡	유근웅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평생교육사업소
10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유근웅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철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12	세입예산 편성 소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13	세입예산 과목의 임의 편성 등 소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부서 공통
14	기금 운용 및 결산 소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15	사회복지기금 관리 소홀	홍인수	복지정책과
1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홍인수	회계과
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소홀	홍인수	기획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교통과
제 목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 및 이월사업 확정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결산현황(주차장특별회계)

(단위: 천원)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 (C=A-B)	다음연도 이월액(D)			잔 액 (E=C-D)	비 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4,224,546	2,505,283	1,719,263	1,722,298	1,675,000	47,298	△3,035	

○ 세입결산(내부거래)

(단위: 천원)

과 목 (A)	예산현액 (B)	징수결정액 (C)	실제수납액 (D)	불납손액 (E)	미수납액 (F=B-D)	비 고
내부거래	1,779,573	1,392,135	1,392,135	-	387,438	일반회계 전입금

□ 문 제 점

○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과목의 내부거래(일반회계 전입금) 예산현액 1,779,573천원을 징수결정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전출금인 1,392,135,000원만 집행하고 잔액 387,438,000원은 전출하지 않아 1,392,135천원만 징수결정하여 387,438천원의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였음.

○ 이에 2021회계연도 이월 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장특별회계)으로 이월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잉여금 부족으로 △3,03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교통과(사업부서)에서는 향후 전출금 집행을 누락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월액 요구시 잔액 등을 정확히 추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사업부서와 이월사업비 최종확인을 거쳐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건설과
제 목	예비비 과다 편성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과다 편성현황

○ 2020회계연도

(단위: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예비비	비율(%)	비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32,357	364,557	27.4	
주 차 장 특 별 회 계	5,680,902	186,307	3.3	

○ 2021회계연도

(단위: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예비비	비율(%)	비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97,015	48,313	3.72	

□ 문 제 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연례 반복적으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 운용이 소홀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2021회계연도 예비비 미편성으로 시정이 되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27.4%에서 3.72%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1%를 크게 상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운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수요에 대처하고, 예비비 과다편성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
제 목	자금 운용 소홀(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운용 현황

○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

회 계 명	회계연도	예 산 액	순세계잉여금	비율	비 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	32,458,309	8,228,311	25.35	
	2020년	30,267,443	6,831,234	22.57	
	2019년	30,159,450	4,751,599	15.7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1년	48,755,042	6,870,297	14.09	
	2020년	38,655,631	5,570,316	14.41	
	2019년	35,997,246	3,626,527	10.07	

※ 순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등)

○ 일반회계 전입금(최근 3년간)

(단위: 천원)

회 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99,952	3,861,000	3,030,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25,734	10,304,070	10,213,250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잉여금, 불용액 등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 예탁 등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야 함.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8,22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35%이며, 전입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도 16.02%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예산액(A)	순세계잉여금(B)	전입금(C)	비율[(B-C)/A]	비 고
2021년	32,458,309	8,228,311	3,030,000	16.02	
2020년	30,267,443	6,831,234	3,861,000	9.81	
2019년	30,159,450	4,751,599	2,599,952	7.13	

□ 개선 및 권고사항

- 재정운용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잉여금의 증가는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25.35%이며, 전입금을 제외한 비율도 16.02%로 예산운용 및 자금관리의 비효율성이 있음.
- 따라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기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문화체육과, 기술기획과
제 목	폐지 기금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일반회계 세입조치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폐지 기금 현황: 3개 기금

－ 기금 폐지일자

-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11. 3.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021. 12. 31.)
- 가평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1. 12. 27.
- 가평군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2021. 12. 27.

－ 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계	조 성 규 모				비 고
		예치금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계	원 금	이 자	
계	8,832,629	61,214	8,771,415	8,719,327	52,088	
사 회 복 지 기 금	6,709,410	44,940	6,664,470	6,624,950	39,520	
체 육 진 흥 기 금	1,066,872	2,161	1,064,711	1,058,360	6,351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56,347	14,113	1,042,234	1,036,017	6,217	

□ 문 제 점

-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인단체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 2021년도에 폐지되어 기금 목적이 사라짐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을 가평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 결산검사일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임에 따라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5,000,000천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가평군장학기금 300억 조성을 위한 금액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 예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당해 연도에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예산편성 후 각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 아울러 예치금(61,213,355원)도 2021년 당해연도가 아닌 2022년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바 있음.

(단위: 원)

기 금 명	계	세 입 조 치 내 역		입금일자	비고
		예 치 금	이 자		
계	61,213,875	61,213,355	520		
사 회 복 지 기 금	44,940,433	44,940,433	-		
저소득생활유자금	30,807,862	30,807,862	-	2022.01.05.	
보 훈 기 금	729,647	729,647	-	2022.01.07.	
장 애 인 복 지 기 금	536,225	536,225	-	2022.01.05.	
노 인 복 지 기 금	4,748,958	4,748,958	-	2022.01.05.	
여 성 복 지 기 금	72,047	72,047	-	2022.01.05.	
아 동 복 지 기 금	8,045,694	8,045,694	-	2022.01.05.	
체 육 진 흥 기 금	2,160,548	2,160,528	20	2022.01.14.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4,112,894	14,112,394	500	2022.01.07.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관리부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탁금 5,00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탁금 3,771,415천원에 대한 기금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기타반환금)하기 바라며,
- 향후 기금과 관련한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차후 다른 기금 폐지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회계과 등 13개 부서
제 목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일반회계 불용액(1억 원 이상)

(단위: 개,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불용액 (집행잔액)	비고
13	32	73,623,491	55,057,057	10,831,675	653,180	7,081,579	

※ 일반회계 불용액(1억 원 이상) 현황: 불임

□ 문 제 점

- 1억 원 이상 불용예산은 13개 부서에서 32건, 총 7,081,57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당초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정리되지 않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장되는 등 소홀한 예산운영을 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1억 원 이상) 현황

【회계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행정업무추진지원	1,162,424	989,524	60,000	-	60,000	-	-	112,900	9.7
청사 등 공유건물 관리	1,881,905	1,689,302	-	-	-	-	-	192,603	10.2

【행복돌봄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경로당 운영 지원(자체)	344,400	230,129	-	-	-	-	-	114,271	33.2
노인복지관 운영	1,140,000	958,389	-	-	-	-	18,161	163,450	14.3
출산 장려 지원	955,482	802,248	-	-	-	-	-	153,234	16.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7종)	1,000,181	828,405	-	-	-	-	17,177	154,599	15.5

【일자리경제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741,826	439,455	55,000	55,000	-	-	123,686	123,685	16.7

【문화체육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가평 문화원사 건립	4,564,466	4,188,094	260,196	-	260,196	-	1,747	114,429	2.5
청평테니스장 이전 설치공사	1,250,000	1,148,586	-	-	-	-	-	101,414	8.1
북면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570,772	1,146,385	314,387	-	314,387	-	-	110,000	7.0

【관광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	3,437,452	3,123,625	31,649	-	31,649	-	150,127	132,051	3.8

【산림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산불방지대책(군비)	957,716	749,673	-	-	-	-	-	208,043	21.7

【건설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지출액 ㉓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㉖	불용액	불용률
			계 ㉕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82,691	980,721	102,024	-	102,024	-	-	199,946	15.6
농로 교량사업	1,200,000	625,631	294,391	-	294,391	-	-	279,978	23.3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지원)	14,507,004	7,695,939	6,442,448	-	6,442,448	-	250,018	118,599	0.8
하천유지관리	1,327,000	892,547	208,975	-	208,975	-	-	225,478	17.0
소하천정비	2,355,115	1,546,920	636,565	258,025	378,540	-	-	171,630	7.3
세천정비공사(전환사업)	1,694,000	1,071,899	214,056	-	214,056	-	-	408,045	24.1

【환경과】 (※ 현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지출액 ㉓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㉖	불용액	불용률
			계 ㉕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879,270	2,368,190	312,570	-	312,570	-	87,020	111,490	3.9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	1,170,747	953,403	-	-	-	-	-	217,344	18.6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운영	3,976,188	3,870,030	-	-	-	-	-	106,158	2.7

【도시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지출액 ㉓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㉕	불용액	불용률
			계 ㉖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도비)	757,171	598,967	-	-	-	-	5,244	152,960	20.2
가평·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2,670,470	2,082,945	30,714	-	30,714	-	-	556,811	20.9
설악·청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5,827,286	4,228,013	1,313,028	1,024,449	288,579	-	-	286,245	4.9
상·조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853,278	485,684	10,000	-	10,000	-	-	357,594	41.9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3-13호선 보도개설공사	530,000	273,118	-	-	-	-	-	256,882	48.5
읍내지구 도시개발사업	1,500,000	699,768	500,000	500,000	-	-	-	300,232	20.0

【교통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지출액 ㉓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㉕	불용액	불용률
			계 ㉖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2,040,000	1,511,145	-	-	-	-	-	528,855	25.9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779,573	1,392,135	-	-	-	-	-	387,438	21.8

【상수도사업소】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	965,510	841,195	-	-	-	-	-	124,315	12.9

【평생교육사업소】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㉔+㉔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㉔	불용액	불용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도서관 운영	1,429,856	1,151,154	45,672	-	45,672	-	-	233,030	16.3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등 6개 부서
제 목	불요불급한 예산 외의 예산전용 자제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통 계 목		전용액	전용일	사 유
	당 초	전용			
기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시설비	12,500	'21. 7. 16.	예산작업실 환경 개선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21. 11. 29.	기록관 환경 개선
일자리경제과	행사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0	'21. 10. 27.	5일장 방역요원 채용
산림과	사무관리비	시설비	150,000	'21. 4. 1.	피해우려목 제거
	행사운영비	시설비	5,000	'21. 11. 12.	사업 추가공정 발생
	재료비	시설비	10,000	'21. 11. 12.	사업 추가공정 발생
하수도사업소	사무관리비	민간사업보조	100,000	'21. 7. 16.	사업 추가공정 발생
평생교육사업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민간위탁금	8,400	'21. 9. 30.	부족예산 발생

※ 추경확정일: '21. 4. 1.(1회) / '21. 6. 23.(2회) / '21. 9. 15.(3회) / '21. 12. 16.(4회)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세출예산은 목적 외 예산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하여야 하나 신속한 추진을 이유로 예산을 전용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 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함.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관광과 등 7개 부서
제 목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1억 원 이상)

(단위: 개,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이월액			비율	비고
			계	명사이월	사고이월		
7	21	50,743,286	22,591,800	5,378,955	17,212,845	44.5%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1억 원 이상) 현황: 붙임

□ 문 제 점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 보상협약, 지연발주 등의 이유로 1억 원 이상 이월하는 사업이 21건 22,591,800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4.5%의 과다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과다한 사업비의 이월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붙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1억 원 이상) 현황

【관광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7080 청평고을 조성사업	8,927,122	5,081,974	-	5,081,974	-	56.9	일부사업 마무리
제령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4,831,775	1,832,032	1,832,032	-	-	37.9	일부사업 마무리

【산림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사업 (전환사업)	1,232,447	260,976	-	260,976	-	21.2	토지사용 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건설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농어촌도로(설악206호선) 확포장공사	435,735	349,995	-	349,995	-	80.3	편입용지 보상 협의
농어촌도로(상205호선)확 포장공사	1,200,000	999,041	-	999,041	-	83.3	편입용지 보상 협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276,691	102,024	-	102,024	-	8.0	동절기 및 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지원)	14,507,044	6,442,448	-	6,442,448	-	44.4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지연

【건설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소하천정비(앵상골천)	1,261,957	336,576	336,576	-	-	26.7	잔여토지 보상 협의 지연 (상속 분쟁)
소하천정비(사근천)(전환)	1,745,455	449,737	129,763	319,974	-	25.8	동절기 공사중지 및 준공 기한 미도래
소하천정비(앵상골천)	1,592,561	1,050,110	-	1,050,110	-	65.9	동절기 공사중지
세천정비공사(전환사업)	1,694,000	214,055	-	214,055	-	12.6	동절기 공사중지

【도시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㉒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설악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 개설공사	670,000	200,000	-	200,000	-	29.9	편입토지 보상협의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공사	829,886	109,608	-	109,608	-	13.2	편입토지 보상협의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74호선 개설공사	200,000	185,391	-	185,391	-	92.7	편입토지 보상협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00,000	108,050	-	108,050	-	22.5	사업 미완료로 용역비 이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1,900,000	192,393	-	192,393	-	10.1	보상비 이월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1,996,158	1,471,809	1,471,809	-	-	73.7	편입토지 보상협의

【교통과】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㉔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10,000	743,772	743,772	-	-	91.8	토지 및 지장물건 등 보상 미집행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국비)	430,000	420,040	420,040	-	-	97.8	계약방식 변경

【상수도사업소】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㉔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사업)	1,058,174	753,402	444,963	308,439	-	71.2	토지 미징구 및 수도 공급 대상지 검토 예산 이월

【평생교육사업소】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㉔=㉑+㉔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이월사유
		계 ㉔	명시이월 ①	사고이월 ②	계속비이월 ③		
평생학습관 건립	3,634,281	1,281,919	-	1,281,919	-	35.3	토지보상 미지급 및 설계 용역 잔금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건설과
제 목	예비비 집행잔액 표기 불부합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예비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명	부서명	예비비과목 예산현액㉑	지출액㉒	집행잔액㉓=㉑-㉒			
				계 ㉓=㉑+㉔+㉕+ ㉖+㉗+㉘	보조금 정산잔액㉔ 낙찰차액㉖	예산 절감액㉕ 지출잔액㉗	계획변경등집행 사유미발생㉘ 예비비㉙
일반회계	기획감사담당관	5,262,122	-	5,262,122	-	-	-
					-	5,262,122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23,200	-	23,200	-	-	-
					-	23,20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건설과	48,313	-	48,313	-	-	-
					-	48,313	-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21호)에 따르면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④보조금 정산잔액, ⑤예산절감액, ⑥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⑦낙찰차액, ⑧지출잔액, ⑨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⑨예비비 항목에는 예비비 과목의 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목 집행잔액 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항목 중 ⑨예비비 항목이 아닌 ⑧지출잔액으로 잘못 표기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 집행잔액 표기 불부합 사항에 대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토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적된 사안임.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등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건설과, 평생교육사업소
제 목	성과지표 달성을 미흡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성과목표관리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군정방침·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함.

○ 성과지표 달성을 50% 미만 현황

부서명	정책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달성현황			비고
				목표	실적	달성율	
기획감사담당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교육 개최 횟수	3	1	33%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보조	완료 보고	3	1	33%	
문화체육과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문화 진흥 및 경제 활성화	성공적 축제 개최 지원	군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	100	0	0%	
	스포츠 육성지원을 통한 군민의 행복한 삶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율	(2021년 대회개최건수/전년도 대회개최건수)*100	100	0	0%	
건설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정착	수상레저 및 유도선 안전문화 정착 홍보실적	(캠페인진행횟수/목표)*100	100	33	33%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인문학 북콘서트 운영	인문학 북콘서트 운영횟수	4	0	0%	
	청소년 권리증진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 조성과 유해환경 지도 점검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실적	이용자수	55,000	11,909	21%	

□ 문 제 점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성과지표 달성률 50% 미만이 5개 부서에 7건임.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축소 운영된 것이 6건이며 기타 1건으로 분석되었음. ※ 기타: 일자리경제과(1건)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된 정책목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중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정책목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관리체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수정계획에 대해 정책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성과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의 타당성 내지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서별 성과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적인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등 4개 부서
제 목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예산현액 대비 집행을 50% 미만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183,040	70,417	-	-	112,623	
행복돌봄과	경로당 사회활동	149,400	-	-	14,940	134,460	
축산유통과	거점세척소독시설 신축	154,637	37,300	-	10,000	107,337	
도시과	설악도시계획도로 소로2-19호선 개설공사	670,000	185,114	200,000	-	284,886	
	현리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개설공사	800,000	17,435	-	-	782,565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3-40호선 개설공사	258,000	5,595	-	-	252,405	
	상면도시계획도로 중로2-24호선 개설공사	300,000	10,300	-	-	289,700	

□ 문 제 점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을 50% 미만 중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은 4개 부서 7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운영 내지 미운영된 사업이 3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4건 중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3건과 도로관리청(경기도) 직접 공사요청 1건으로 분석되었음.
- 이중 자체사업(군비)으로 계획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재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 예정금액을 판단하여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내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내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될 경우 이를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관리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1년 재정투자심사

(단위: 천원)

개최횟수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중기계획 반영여부	
	원안	조건부	반영	미반영
8	5	13 (중기반영 조건)	12	1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투자 사업은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단서 규정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심사를 이행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인 경우 다음 연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2021년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심사를 한 사업을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22년 4월 현재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2년 6월에 입찰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심사 시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심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편성할 것.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을 반영 조건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제 목	세입예산 편성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1년 당초예산 세입편성

(단위: 천원)

세목	예산부서 편성	세입부서 요구	증감
지방세(보통세)	56,426,000	57,526,000	△1,100,000

○ 2021년 제4회 추경세입(지방세)

(단위: 천원)

세목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합계	100,000	1,650,000	1,200,000	300,000	2,000,000
	5,250,000				

□ 문 제 점

-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부서에서 요구한 세입예상액(지방세-보통세)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부서에서 1,100,000천원 적게 예산을 편성하였고,
- 세입부서에서는 2021년 제4회 추경 시 세입추경 재원(지방세-보통세)으로 5,250,000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가평군 재정운영에 중요한 재원임에도 세입(지방세) 편성에 있어 세입주관부서인 세정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로 예산부서에 요구한 세수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세입부분은 세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람.
- 지방세는 대체로 세목별 납기가 정해져 있어 세수확보 시기를 예측하기 쉬운 재원임에도 회계연도 말인 12월 마지막 추경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해연도 가용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월예산이 되므로 가급적 세수추계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 필요한 세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부서 공통
제 목	세입예산 과목의 임의 편성 등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과목 중 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목을 신설해서 결산(징수결정 및 수납)함. (자치행정과 외 13개 과)

□ 문 제 점

- 예산은 의회승인일로부터 구속력이 있어 가평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이를 지켜야함에도 의회승인 예산대로 결산(징수결정 및 수납)하지 않고 각 부서 사업담당자가 임의로 목을 만들어 결산(징수결정 및 수납)을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과목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
 -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추계를 정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세입예산(장-관-항-목)을 편성하여야 함. 그러나 불명확한 세입에 대하여 임의로 세입목을 신설하여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함. 이에 대하여는 예산에 해당되는 목이 없을 경우 ‘224 기타수입’ 중 ‘224-07 그외수입’ 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 추경에 해당과목으로 목을 요구/편성하여야 할 것임.
- 세입예산 과목 연찬 철저
 - 2021년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신설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관련하여 경기도는 도 세정과-2725(2021. 2. 1.)호, 가평군은 세정과-754(2021. 2. 3.)호로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변경된 세입과목에 대한 연찬 부족으로 일부 부서에서 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223-01)에 편성함.

○ 예산과목

구분	장	관	항	목
국비보조금 잔액반납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700)	보전수입(710)	전년도이월금 (712)	국고보조금사용 잔액(712-01)
도비보조금 잔액반납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700)	보전수입(710)	전년도이월금 (712)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712-02)
군비보조금 잔액	세외수입(200)	임시적세외수입 (220)	보조금반환수입 (223)	자체보조금반환 수입(223-02)

- 예산편성 부서 및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각 실과 등 부서에 혼선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깊은 업무연찬과 해석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시행하여야 하나, 도에서 온 문서를 그대로 이첩 시행하여 각 부서 세입업무 담당자의 해석 오류나 혼선으로 결산 시 세입과목에 없는 과목을 임의 신설하여 결산 하였음.
- 앞으로는 가평군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각 부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석하거나 정리 후 문서를 시행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기금 운용 및 결산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운용함.
- 기금정비계획 미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함.

□ 문 제 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는 통합계정과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나 구분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모든 기금의 존속 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함에도 계획수립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아니함.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④항)

□ 개선 및 권고사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에 따른 재원과 용도는 다음과 같음.

구분 계정	재원(수입)	용도(지출)	근거규정
통합계정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예수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장 제13조 ①항, ②항

구분 계정	재원(수입)	용도(지출)	근거규정
재정 안정화 계정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군세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뚜렷한 악화 3. 대규모 건설사업 및 기타 부득이한 경비 4. 일반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1~3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함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장 제20조 ①항, ②항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관련하여 관련 법과 조례에 맞게 결산검사일 이후부터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정비계획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이후에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제 목	사회복지기금 관리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계	조성액	사용액		
7,195,248	77,422	127,801	50,379	7,272,670	102,252

□ 문 제 점

-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누락함.
- 재무제표 첨부서류 상 융자금 채권 잔액(104,035천원) 불일치함.
- 장기간 융자금 채납액 등 미처리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은 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되며 기금 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하기를 권고함.
- 재무제표 첨부서류 상 융자금 채권 잔액 차이를 검토하여 정정하고
- 융자금 채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함.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6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종류별 현황

(단위: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4,898,669	303,985	17,280,830	16,976,845	5,202,654
보증금	113,011	△10,447	1,016	11,463	102,564
보관금	4,721,865	314,350	17,279,112	16,964,762	5,036,215
잡종금 등	63,793	82	702	620	63,875

□ 문 제 점

-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 등의 부재로 일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 보관금 등에 대한 이자(잡종금기타-예금이자 63,855천원)는 철저히 관리하고 반환 요구시 원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함에도 구분이 부정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절차에 맞게 보관, 반환청구 및 세입조치하기를 권고함.

2021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7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 고
	계	조성액	사용액		
19,189,406	89,449,497	98,119,282	8,669,785	108,638,903	

○ 예치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이 율	금 액	기 간	비 고
일반정기예금	0.66%	2,000,000	6개월	
	0.66%	2,000,000	6개월	
	0.66%	2,000,000	6개월	
	0.84%	84,000,000	3개월	
	0.79%	2,000,000	12개월	
	0.79%	2,000,000	12개월	
	0.79%	2,000,000	12개월	
기 타	-	12,638,903	-	
합 계	-	108,638,903	-	

○ 운용계획의 예탁 및 융자 이자율

구 분	~ 20.12.31	21. 1. 1~	22. 1. 1~	비 고
예탁	1.7%	0.6%	0.9%	
융자	2.5%	2.2%	2.5%	

□ 문 제 점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기금운용에 따른 외부거래의 이자수입이 130,468천원, 0.2%로 미비함.

※ [이자수입/{(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말 조성액)/2}] ÷ 0.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에 의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으면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교부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장기성 및 단기성 여유자금으로 분류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를 권함.

IV.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검사위원	해 당 부 서
1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불일치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사업소
2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3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	이상현	행복돌봄과, 일자리경제과, 축산유통과, 건설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4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미흡	이상현	기획감사담당관
5	국고보조금 미수납처리 등에 따른 금고출납계산서 불일치	신명철	상수도사업소
6	예산전용 부적정	신명철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7	예비비 과다 편성	신명철	복지정책과, 건설과, 교통과
8	지방세 세수 추계 철저	유근웅	세정과
9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유근웅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0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 철저	유근웅	건설과, 교통과
11	국고보조비 미수령에 따른 군비 초과 지출	유근웅	교통과
1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13	이월예산 관리의 철저	정진환	기획감사담당관
14	세입예산 편성 소홀	정진환	세정과
15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산정 철저	홍인수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도시과, 축산유통과
16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철저	홍인수	회계과
17	연도말 기금조성액 관리 철저	홍인수	기획감사담당관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하수도사업소
제 목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불일치				

개선 및 권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4에 의거 동일한 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의 내부거래 처리는 반드시 일치하여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 하도록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4(일부발취)

② 순계처리과목 예산편성원칙

- 내부거래처리 : 자치단체내의 회계 간 중복계상부문의 처리
 - －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세입·세출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편성

③ 거래유형별 예산편성방법/내부거래

- 편성방법: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 하도록 편성

○ 내부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

세 입	세 출	비 고
① 전 입 금	① 전 출 금	
② 예 수 금	② 예 탁 금	
③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③ 예수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 내부거래 세입·세출 대응과목 현황

○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 입 (A)			세 출 (B)			차액(A-B)	비고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전입금	기타회계기금	19,117,168	전출금	기타회계기금	19,117,168		
	수익적수입 (공기업)	9,225,865		공기업 상전출	14,320,373	-5,094,508	
	자본적수입 (공기업)	15,176,143		공기업 자본전출	10,578,635	4,597,508	
예수금		10,033,815	예탁금		10,000,663	33,152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174,000	예수금원금상환		4,174,001	-1	
예탁금이자수입		666,760	예수금이자상환		666,759	1	

○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 입 (A)			세 출 (B)			차액(A-B)	비고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전입금	기타회계기금	19,122,680	전출금	기타회계기금	19,096,855	25,825	
	수익적수입 (공기업)	9,227,349		공기업 상전출	14,320,373	-5,093,024	
	자본적수입 (공기업)	15,176,143		공기업 자본전출	10,578,635	4,597,508	
예수금		9,641,214	예탁금		9,883,507	-242,29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174,000	예수금원금상환		4,174,001	-1	
예탁금이자수입		666,773	예수금이자상환		666,759	14	

※ 내부거래 대응과목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불임

□ 문 제 점

- 내부거래의 주고받는(세입·세출) 금액은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치하여야 할 세입·세출 과목이 불일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하고 있음

- (세입)기타회계기금전입금과 (세출)기타회계기금전출금의 차액은 결산액 25,825천원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수익적수입 타회계전입금과 (세출)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의 차액은 예산액 △5,094,508천원, 결산액 △5,093,024천원
-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자본적수입 타회계전입금과 (세출)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의 차액은 예산액·결산액 각 4,597,508천원
- (세입)예수금과 (세출)예탁금의 차액은 예산액 33,152천원, 결산액 △242,293천원
- (세입)예탁금원금회수수입과 (세출)예수금원금상환과의 차액은 예산액·결산액 각 △1천원
- (세입)예탁금이자수입과 (세출)예수금이자상환의 차액은 예산액 1천원, 결산액 14천원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시 내부거래에 대한 부서 간 충분한 협의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담당하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 주고받는 과목과 금액이 일치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기획감사담당관】

- 예산편성 작업 시 검증기간을 운영하여 내부거래 예산과목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였음
 - 2021년 : 3회추경, 4회추경(내부거래 일치 검증)
 - 2022년 : 본예산(내부거래 일치 검증)

【하수도사업소】

- 내부거래(공기업자본전출)의 경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6,717,635천원을 전출하였으나, 타회계전입금(자본적수입)으로 11,315,143천원을 편성함
- 검토 결과 타회계전입금(자본적수입) 11,315,143천원 중 △582,000천원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73-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173-02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앞으로는 예산과목에 알맞은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오(誤)편성한 국고보조금(△582,000천원)을 빼면 실제 타회계전입금(자본적수입)은 11,897,143천원 [11,315,143천원-(-582,000천원)]으로 공기업자본전출액(6,717,635천원)과의 차액은 5,179,508천원이 되며 공기업경상전출 차액 △5,179,508천원과 합치면 0원으로

- 이는 5,179,508천원을 수익적 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019회계연도에 결산 지적받았던 사항과 같은 이유임
 - 환경과(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전 사업’ 을 경상적 성격으로 전출하였으나,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는 자본적 지출 성격인 「235-401 기계장치 시설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세입·세출 대응과목이 불일치하게 됨
-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 대수전비’ 는 수익적 지출의 영업비용 중 시설장비유지비 및 수선비와 구분되는 대규모의 수선경비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재이 증가시키거나 현실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경비임(시설비 과목편성 기준 4호)
-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본예산부터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전 사업’ 을 내부거래 성격을 ‘자본 전출-자본적 수입’ 으로 일치시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음

[붙임] 내부거래 대응과목 회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전입금/ 전출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 / 전입금 (A)		세출 / 전출금 (B)		차액 (A-B)	세입 / 전입금 (A)		세출 / 전출금 (B)	
		기타회계	기금	기타회계	기금		기타회계	기금	기타회계	기금
계		8,097,710	11,019,458	5,622,931	13,494,237		8,103,223	11,019,457	5,612,222	13,484,633
일 반 회 계		1,795,000		3,827,931	2,056,027		1,784,291		3,827,931	2,046,424
기 특 회	의 료 급 여	807,865					807,865			
	주 차 장	2,193,241					2,193,241			
	수 질 개 선	826,825			418,752		826,825			418,752
	공영개발사업			1,795,000					1,784,291	
기 금	통합재정안정 화		11,019,458					11,019,457		
	통 합 관 리				10,815,266					10,815,266
	지 방 채 상 환	200,000			204,192		200,000			204,191
	가 평 군 장 학	1,603,779					1,603,779			
	폐 기 물 처 리	140,000					130,397			
	재 난 관 리	531,000					556,825			

【전입금/ 전출금(공기업경상전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A)	세출(B)	차액 (A-B)	세입(A)	세출(B)	차액 (A-B)
	타회계전입금 (수익적수입)	공기업 경상전출		타회계전입금 (수익적수입)	공기업 경상전출	
계	9,225,865	14,320,373	-5,094,508	9,227,349	14,320,373	-5,093,024
일 반 회 계		4,946,035			4,946,035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	9,374,338			9,374,338	
공 기 업	상 수 도	85,000		86,484		
특 별 회 계	하수도	9,140,865		9,140,865		

【전입금/ 전출금(공기업자본전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A)	세출(B)	차액 (A-B)	세입(A)	세출(B)	차액 (A-B)
	타회계전입금 (자본적수입)	공기업 자본전출		타회계전입금 (자본적수입)	공기업 자본전출	
계	15,176,143	10,578,635	4,597,508	15,176,143	10,578,635	4,597,508
일 반 회 계		9,219,035			9,219,035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	1,359,600			1,359,600	
공 기 업	상 수 도	3,861,000		3,861,000		
특 별 회 계	하수도	11,315,143		11,315,143		

【예수금 · 예탁금】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A)	세출(B)	차액 (A-B)	세입(A)	세출(B)	차액 (A-B)
	예수금	예탁금		예수금	예탁금	
계	10,033,815	10,000,663	33,152	9,641,214	9,883,507	- 242,293
일 반 회 계		6,990,755			6,990,755	
기타특별회계	수 질 개 선	1,178,966			1,178,966	
기 금	통합재정안정화	8,241,178		8,169,721		
	통 합 관 리	1,792,637		1,471,493		
	사 회 복 지	72,000			72,000	
	문화예술발전	2,071				
	가평군장학	1,710,380			1,637,295	
	농업인단체육성	4,491			4,491	
	옥외광고장비	42,00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예수금원금상환】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A)	세출(B)	차액 (A-B)	세입(A)	세출(B)	차액 (A-B)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수금 원금상환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예수금 원금상환	
계		4,174,000	4,174,001	-1	4,174,000	4,174,001	-1
일 반 회 계			3,924,000			3,924,000	
기 금	통 합 관 리	3,924,000	250,001		3,924,000	250,001	
	옥외광고정비	250,000			250,000		

【예탁금이자수입 · 예수금이자상환】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결 산		
		세입(A)	세출(B)	차액 (A-B)	세입(A)	세출(B)	차액 (A-B)
		예탁금 이자수입	예수금 이자상환		예탁금 이자수입	예수금 이자상환	
계		666,760	666,759	1	666,773	666,759	14
일 반 회 계			277,200			277,200	
기 금	통 합 관 리	277,200	389,559		277,200	389,559	
	지 방 채 상 환	4,087			4,087		
	사 회 복 지	119,468			119,468		
	문 화 예 술 발 전	26,971			26,985		
	식 품 진 흥	1,700			1,700		
	체 육 진 흥	17,992			17,992		
	가 평 군 장 학	190,555			190,555		
	폐 기 물 처 리	1,946			1,946		
	재 난 관 리	1					
	농업인단체육성	17,481			17,481		
	옥 외 광 고 정 비	9,359			9,359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2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제 목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이월사업비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이월액(B)				이월액 비율(B/A)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군 전체	660,823,154	122,472,401	55,921,278	9,498,366	57,052,757	18.5	
도시과	54,321,657	20,103,805	6,497,234	2,556,126	11,050,445	37.0	

□ 문 제 점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 및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도시과의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0,103,805천원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37%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등 민간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반회계 군 전체 이월사업비 비율 18.5%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도시과(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앞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것임
- 사업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비의 이월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기획감사담당관】

-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국·도비가 포함된 이월사업을 제외한 군 자체사업에 대한 이월예산 편성 시 사업담당 교육을 통해 사업 진행도를 분석·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음
 - － 2021년 이월사업 : 197건 1,251억원
 - － 2022년 이월사업 : 153건 916억원(전년대비 335억원 감액)

【도시과】

- 향후 이월예산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신청 시 집행 가능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3	검사위원	이 상 현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등 6개 부서
제 목	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19회계연도 보조금 반환 명세 현황: 붙임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은 보조금 수령액과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부담비율을 적용 산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집행액 산정 기준비율과 같은 방법으로 재원별 집행잔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전재난과 등 6개 부서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부담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였음.
- 그 결과,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의 결산 집행잔액과 실제로 반환한 국·도비 반환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은 한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수치의 정확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담당자들은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부담비율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행복돌봄과】

- 2019회계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시 일부 사업의 경우 e호조시스템으로 결산작업완료 후 도 정산보고시 국·도비 부담비율로 재정산 작업을 하면서 최종 정산금액은 e호조시스템과 다르게 되어 실제로 반환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함

- 예산 및 결산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국도비보조사업 담당자들이 부담 비율 및 정확한 정산금액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음

【일자리경제과】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정산 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비율 및 군비부담비율을 확인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 재원별 정산을 실시하여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축산유통과】

- 사업 담당자의 교육 및 주기적인 예산관리와 철저한 집행내역 검토를 통하여, 보조사업 집행 및 결산 시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 부담비율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건설과】

- 보조금 사업 담당자의 교육 및 사업 진행 시 주기적인 예산관리와 철저한 집행내역 검토를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결산 시 내시비율 및 군비 부담비율을 신중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교통과】

-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업무는 효율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경기도장애인복지회군지부)에서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으로 재위탁하여 2019.09.18.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위와 관련, 위수탁협약해지에 따른 기수탁자(경기도장애인복지회군지부)의 해지이후 절차 불이행과 더불어 ‘위수탁 협약 해지 취소소송’ 제기 등으로 해지 정산이 지연되어(※소송결과 2020.3.26. 소 취하)
- 2019년 회계연도 보조금 정산에 있어 세출 집행액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바 있었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허가민원과】

- 보조금 정산 시 국·도비 내시 비율과 군비 부담 비율, 집행액 및 집행 잔액을 정확히 파악 후 정산 보고 및 반납 처리하여 차후 결산 시 반환 금액과 집행 잔액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보조금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보건소】

- 국도비 보조금 정산 시 국도비 내시비율 및 군비부담비율 등 해당내용을 신중히 확인하여 정확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붙임] 2019회계연도 보조금 반환 명세 현황

【안전재난과】 (※ 현 측산유통과, 건설과)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 - [㉡])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세 부											
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	401-01	계 국비 시도비	2019	67,250,000	66,708,385	0	541,615	2,440,615		-1,899,000	재원비율 미확인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시설비			0	0	0	0	0	0		
				67,250,000	66,708,385	0	541,615	2,440,615	2020-11-17	-1,899,000	
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	101-04	계 국비 시도비	2019	90,000,000	45,850,950	0	44,149,050	43,038,590		1,110,460	재원비율 미확인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0	0	0	0	0	0		
				90,000,000	45,850,950	0	44,149,050	43,038,590	2020-11-17	1,110,460	

【행복돌봄과】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 - [㉡])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세 부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307-10	계	2019	6,153,000	6,152,140	0	860	530	2020-12-23	330	도에 정산보고 시 착오 정산으로 차액 발생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국비		5,350,000	5,349,600	0	400	460		460		
	비보조	시도비		803,000	802,540	0	460	70		2020-12-23		390
밀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307-11	계	2019	15,818,000	15,338,630	0	479,370	449,370	2020-11-09	30,000	도에 정산보고 시 착오 정산으로 차액 발생	
어린이집 지원(교재교구비)	사회복지 사업보조	국비		10,545,000	10,225,420	0	319,580	289,580		2020-11-09		30,000
		시도비		5,273,000	5,113,210	0	159,790	159,790		2020-11-09		0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307-11	계	2019	19,936,000	19,752,700	0	183,300	183,300	2020-12-07	0	도에 정산보고 시 착오 정산으로 차액 발생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국비		18,732,000	18,562,240	0	169,760	172,420		2020-12-07		-2,660
		시도비		1,204,000	1,190,460	0	13,540	10,880		2020-12-07		2,660

【일자리경제과】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 - [㉡])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	집행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 - [㉢] - [㉣]				
세 부											
실업대책	307-02	계	2019	432,760,000	417,575,185	0	15,184,815	16,904,420		-1,719,605	보조금 정산에 따른 차액 발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국비		349,000,000	336,775,698	0	12,224,302	13,547,070	2020-12-23	-1,322,768	
		시도비		83,760,000	80,799,487	0	2,960,513	3,357,350	2020-12-22	-396,837	
지방물가 안정관리	201-01	계	2019	20,550,000	19,168,850	0	1,381,150	0		1,381,150	코나아이 예탁금 반납에 따른 경기도 재정산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정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 관리비	국비		20,550,000	19,168,850	0	1,381,150	0		1,381,150	
		시도비		0	0	0	0	0		0	
지방물가 안정관리	201-02	계	2019	1,450,000	1,437,180	0	12,820	0		12,820	코나아이 예탁금 반납에 따른 경기도 재정산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정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공공 운영비	국비		1,450,000	1,437,180	0	12,820	0		12,820	
		시도비		0	0	0	0	0		0	
실업대책	201-01	계	2019	5,000,000	4,642,250	0	357,750	104,570		253,180	재원비율 미확인
지역일자리 지원사업	사무 관리비	국비		0	0	0	0	0		0	
		시도비		5,000,000	4,642,250	0	357,750	104,570	2020-10-28	253,180	
지방물가 안정관리	101-04	계	2019	8,000,000	7,964,370	0	35,630	0		35,630	코나아이 예탁금 반납에 따른 경기도 재정산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정산)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국비		0	0	0	0	0		0	
		시도비		8,000,000	7,964,370	0	35,630	0		35,630	
지방물가 안정관리	301-12	계	2019	35,000,000	35,000,000	0	0	7,453,320		-7,453,320	코나아이 예탁금 반납에 따른 경기도 재정산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보급	기타보상금	국비		0	0	0	0	0		0	
		시도비		35,000,000	35,000,000	0	0	7,453,320	2020-09-23	-7,453,320	
중소기업 성장 지원	402-02	계	2019	37,316,000	33,146,000	0	4,170,000	4,335,000		-165,000	재원비율 미확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이전재원)	국비		0	0	0	0	0		0	
		시도비		37,316,000	33,146,000	0	4,170,000	4,335,000	2020-09-28	-165,000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201-03	계	2019	6,000,000	2,566,970	0	3,433,030	1,766,060		1,666,970	재원비율 미확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행사 운영비	국비		0	0	0	0	0		0	
		시도비		6,000,000	2,566,970	0	3,433,030	1,766,060	2020-10-30	1,666,970	

【교통과】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㉔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㉑	집행액 ^㉒	이월액 ^㉓	집행잔액 ^{㉕=㉑-㉒-㉓}				
세 부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	307-05	계	2019	79,000,000	57,745,680	0	21,254,320	23,612,100		-2,357,780	출납연도 반영으로 인한 차액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국비 시도비		0	0	0	0	0		0	
				79,000,000	57,745,680	0	21,254,320	23,612,100	2020-10-14	-2,357,780	

【허가민원과】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④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⑥ - ^⑤)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②	집행액 ^③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세 부											
농지 및 인허가민원 관리	101-04	계 국비 시도비	2019	18,834,000	18,457,100	0	376,900	355,060	2020-09-17	21,840	도에 정산 보고 시 착오 정산으로 차액발생
	기간제근로			18,834,000	18,457,100	0	376,900	355,060		21,840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등보수			0	0	0	0	0		0	

【보건소】

(단위: 원)

조직 - 분야 - 부문		구분	결 산 내 역					현년도 반환금액 ^④ (2020년)	반환일자	미반환금액 (^⑥ - ^⑤)	비고 (집행잔액과 현년도 반환금액 차액 발생 사유 등)
단 위	목		결산 년도	보조금 수령액 ^②	집행액 ^③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세 부											
국가예방접종사업	307-01	계	2019	874,000	244,360	0	629,640	1,574,920	2020-11-20	-945,280	2019년 국가예방접종 및 예방 접종등록센터 국비 반납, 09~18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 관 국비 환수액 반납
		국비		672,000	187,910	0	484,090	1,211,240		-727,150	
B형주산기감염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	시도비		202,000	56,450	0	145,550	363,680		2020-11-20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4	검사위원	이상현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공통
제 목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개선 및 권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해야 함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 등 성과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나 성과보고서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연계 미흡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해야 하며, 단위사업 설정도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예산서와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지표는 불일치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 또는 100%이상 달성될 수밖에 없거나, 장기적 사업으로 100% 이상 달성될 수 없는 지표를 설정
 - 성과달성도가 74.5%로 2019회계연도(86.1%)에 비해 11.1% 낮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모든 부서에는 성과보고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지표설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미달성 재정사업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성과관리 역량 강화에 노력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기획감사담당관】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 원인분석을 하고 예산체계와 성과계획서 상의 지표가 일치하도록 하여 성과표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 2022년 예산편성 교육 실시 : 2021. 9. 8.(수) 60여명(주무팀장, 업무담당자)

【관광과】

-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정책사업 1개와 대응시키고, 단위사업 설정도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

－ (변경 전) 2020년 기존 성과지표

2020년도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자 만족도(점)	설문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점수
주요관광시설 유지관리 사업추진율(자라섬 등)(%)	(사업완료건수/사업계획건수)*100

－ (변경 후) 2021년 성과지표(안)

2021년 성과지표 수정 계획(단위)	측정산식(방법)
관광홍보 및 안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설문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점수
주요 관광시설 유지관리 사업추진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 － 자라섬 환경정비사업 10회: 75점 － 이화원 시설정비사업 3회: 25점

※ 성과지표 단위사업은 예산서의 단위사업과 일치시키고, 측정산식은 구체적으로 설정

※ 각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 정도는 연말에 사업추진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후 결제 득하여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 또는 100%이상 달성될 수 밖에 없는 사업, 장기적 사업으로 100%이상 달성될 수 없는 사업은 성과지표로 설정 자제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5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상수도사업소
제 목	국고보조금 미수납처리 등에 따른 금고출납계산서 불일치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세입 결산액 및 금고출납계산서 비교

(단위: 천원)

회 계	결 산 액 (실수납액) (A)	금고출납계산서 금 액 (B)	차 액(A-B)	비 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	31,397,055	30,297,749	1,099,306	

❖ 불일치(차액) 사유

- 교부된 국고보조금 가평균 금고 미입금: 726,000천원
- 출납폐쇄일까지 가평균 금고로 미입금된 타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상수도요금: 373,306천원(정당사유)

□ 문 제 점

- 자금없이 사고이월된 2019회계연도 계속비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악면)」의 2019년도 미교부 국고보조금이 2020년 11월에 교부되었음에도
 - 출납폐쇄일까지 가평균 금고로 입금하지 않고 별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기타미수금으로 수납처리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 연찬을 등을 통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 사업담당자와 회계담당자와의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상수도사업소 내부 통장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가평균금고로 입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조치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6	검사위원	신 명 철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과, 농업정책과
제 목	예산전용 부적정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부적절한 예산전용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통 계 목		전용금액	전용일자	비 고
	당 초	전 용			
문화체육과	민 간 위 탁 금	사무관리비	22,519	20. 5.12.	2회추경시 변경가능
	민 간 위 탁 금	시 설 비	10,000	20. 5.12.	
안전재난과 (현 건설과)	연 구 용 역 비	공공운영비	20,000	20. 3.31.	1회추경시 조정가능
	연 구 용 역 비	사무관리비	30,000	20. 3.31.	
농업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타보상금	4,393,000	20.11.25.	추경시 조정가능

❖ 추경확정일: (1회)20.3.17. (2회)20.4.21. (3회)20.9.15. (4회)20.12.16.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세출예산은 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어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추경을 통해 증감 조정하여야 하나
 -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위탁해지에 따른 음악역 T/F팀이 20.3.1.구성되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정 가능하였으나 전용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오류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정정하지 않고 전용으로 조정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기 바라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운영기준을 숙지하여 예산과목의 오류 편성이 없도록 권고함

조치사항(계획)

【문화체육과】

- 제1차 추경안 제출(2020. 2.) 이후 긴급히 음악역1939 T/F팀(2020. 3. 1.)이 가동됨에 따라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여 집행하였으나, 추후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 예정

【농업정책과】

- 예산 편성 시 운영기준을 숙지하여 예산과목의 오류 편성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 전용 보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 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건설과】

- 예산 편성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검토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전용보다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감 조정을 우선 검토하겠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숙지하여 예산편성 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7	검사위원	신 명 철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건설과, 교통과
제 목	예비비 과다 편성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예비비 과다 편성현황

(단위: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예비비	비율(%)	비고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098,604	12,000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32,357	364,557	27.4	
주 차 장 특 별 회 계	5,680,902	186,307	3.3	

□ 문 제 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편의 위주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100분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고 예비비의 과다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함

조치사항(계획)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의하여 편성 운용되고 있는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음

-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비비가 0.1% 초과 편성되었음
- 2021년에는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건설과】

- 2020년 9월,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2021회계연도부터 발전소특별회계 예비비를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여 회계운영 중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교통과】

- 세입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세외수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서 이와 동시에 세출예산의 예비비가 증편된 사항으로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본예산부터 철저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8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지방세 세수추계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0년 군세 세입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본 예산(A)	8,800	14,500
추경액(B)	7,500	12,300
징수액(C)	9,613	13,966
증감1(C-A)	813	△534
증감2(C-B)	2,113	1,666

□ 문 제 점

- 지방세 세수예측은 5년치 과거 자료와 세수추계 모형(성장률 등 변수 21가지)을 기초로 전년대비 예측 활용 하고 있으나, 2020년 일부 군세 세입이 예산과 차이를 보임

- 자동차세는 2020. 10월까지 자동차세(주행분) 징수액이 2,257백만원에 불과했으나 11월분부터 안분을 조정되며 마지막 추경이후인 11월말~12월말 두달간 2,553백만원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최근 5년간 11~12월 징수액과 큰 차이를 보임)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간 11~12월 주행분징수액	824	669	673	189	195	2,553

- 지방소득세는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지방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12월 징수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개인 박OO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가 783백만원으로 12월 징수액 1,314백만원의 60%를 차지하며 징수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는 경기상황, 정부정책 등 외부변동요인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된 세원을 바탕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등과 비교하여 세수 예측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세수추계와 관련하여 자동차세는 관계부서(교통과), 행안부, 울산광역시(주된 특별징수의무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국가의 조세정책 등을 더 세밀히 검토하여 추경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세(군세, 도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세무직원 상호간에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고, 세수추계에 대한 정당성 내지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조치사항(계획)

- 지방세 세수추계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거시전망 예측치를 기준으로 예상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각종 지표는 직·간접적으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의 변화도 세수추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 등은 국내·외 경기에 민감하여 변동성이 매우 강한 세목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각 세목별 담당자들은 통계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연구자료 연찬을 통해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 또한 세수추계 시 타 시·군의 선진 세수추계 방법을 도입·반영하겠으며, 과거지방세 징수 자료와 부동산거래량, 신축건물현황, 공동주택 준공현황 등 주요세원에 대한 기간별, 지역별 세입 특수여건 등을 확인 후 지방세정보화 시스템 세수추계에 반영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9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안전재난과 등 7개 부서
제 목	세입예산 추계 및 편성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세입과목 중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고
계		-	223,499	
안전재난과 (현건설과)	변상금	-	6,268	
안전재난과 (현건설과)	그외수입	-	65,365	
일자리경제과	과징금	-	30,000	
농업정책과	그외수입	-	95,170	
도시과	기타이자수입	-	26,696	

○ 세입과목 중 예산편성 후 징수결정액이 전무한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고
계		396,000	-	
행복돌봄과 (현복지정책과)	이행강제금	5,000	-	
보건소	과징금	2,000	-	
상수도사업소	시도비보조금	389,000	-	

□ 문 제 점

- 2020회계연도에 총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이 된 경우와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 추계를 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조를 통해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하고,
-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정 발생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조치사항(계획)

【기획감사담당관】

-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입원은 최소화하고 과다 계상되는 세입원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음
-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되거나, 편성은 되어있으나 징수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매 추경 시 마다 관·과·소에 주의하도록 전달 및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
- 2021년 3회~4회추경예산 : 세외수입 징수대장 확인하여 전액반영

【복지정책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장사관련 행정처분 대상자가 기간 내 처분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정기적이며 민원인의 사정발생에 따라 변동되므로 적절하게 세입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최초 세입예산 편성 전 이행강제금 추정 계획을 수립하여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고,
- 또한 권고사항에 따라 사정 발생으로 이행강제금 추징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지막 정리 추경에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음.

【일자리경제과】

- 세입예산편성시 징수결정 예정액에 대해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예산 미편성 후 징수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분야별 세입 발생시 세입예산에 반영한 이후 징수결정과 수납을 처리하도록 하겠음.

※ 2020 세입과목 중 예산 미편성 후 징수결정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과목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금액
계			0	30,000	15,000
일자리경제과	과 징 금	무지개주유소	0	15,000	0
		출인원주유소	0	15,000	15,000

【농업정책과】

- 업무지침 숙지 및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설과】

- 2021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정 발생으로 변경될 경우 사전점검 후 마지막 추경 시 세입예산을 반영하여 누락되는 세입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도시과】

- 2020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시 원금은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이자는 누락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보건소】

- 과징금 수입은 수입발생이 임의적이고 예상이 불명확하나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을 추계한 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변경 내역이 있을 경우,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0	검사위원	신명철	소관부서	건설과, 교통과
제 목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 구분 현황

(단위: 천원)

회계명	예산 현액㉑ 예비비과목	지출액 ㉒	다음연도 이월액㉓	보조금 반납금 ㉔	집행잔액㉕=㉑-㉒-㉓-㉔			
					계 ㉕=㉑+㉓+㉔+ ㉖+㉗+㉘	보조금 정산잔액㉖	예산 절감액㉗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㉘
						낙찰차액㉖	지출잔액㉗	예비비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000	-	-	-	12,000	-	-	-
						-	-	12,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364,557	-	-	-	364,557	-	-	364,557
						-	-	-
주차장 특별회계	186,307	-	-	-	186,307	-	-	-
						-	186,307	-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000	-	-	-	200,000	-	-	-
						-	-	200,000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④보조금 정산잔액, ⑤예산절감액, ⑥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⑦낙찰차액, ⑧지출잔액, ⑨예비비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⑨예비비 항목에는 예비비 과목의 잔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과목 집행잔액 구분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 항목 중 ⑨예비비 항목이 아닌 ⑥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⑧지출잔액으로 구분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비 등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건설과】

- 2021년도 회계연도 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명확히 작성해 집행잔액 분석이 원활하도록 조치 하겠음.

【교통과】

- 향후 예비비 과목의 세출예산 잔액에 대하여 집행잔액 사유별 구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집행잔액 분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1	검사위원	유근웅	소관부서	교통과
제 목	국고보조비 미수령에 따른 군비 초과 지출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차액 (A-B)	비고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	계	498,000	464,000	447,944	16,056	
		국비	249,000	215,000	223,972	-8,972	
		군비	249,000	249,000	223,972	25,028	

□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보조금 등이 매분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출예산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국비)」의 국비보조금 34,000천원이 미교부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여 추가적으로 자체재원인 군비 8,972천원을 초과 지출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군비가 초과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 2020년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국비)」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보조로 시행한 사업으로 1차 ~ 8차(2020.11.3.)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도 및 시·군 사업담당자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하여 2020년 중 국비 교부 완료 및 사업비 집행 독려하여

- 2020년 3월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 편성 후 2020년 11월 사업완료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7654(2020.12.31.)호로 세수부족을 사유로 국비 보조금 249백만원 중 교부잔액 34백만원 미교부 통보된 사항으로
-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수령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 추진하여 불필요한 군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2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가평군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63건을 접수하여 주민참여예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1건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였음

□ 문 제 점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 「지방재정법」 제39조3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나 주민의견서를 첨부하지 않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 주민 제안된 63건을 분석해보면 일반주민제안 19건, 이장제안 44건으로 전체 제안의 약 70%를 이장이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역(리 및 마을 단위 전주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읍면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바람
 -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의 읍면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읍면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시 회의자료 활용뿐임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주민참여방법을 ① 공청회 또는 간담회 ② 설문조사 ③ 사업공모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공모 외에 주민의견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 제안자에게는 반드시 제안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조치사항(계획)

- 예산안 의회 제출 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겠음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 홈페이지, 군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참여예산 홍보 확대
 - 간담회 등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
 - 가평군청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2020년 일반주민제안건 선정·비선정 목록을 게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임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3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이월예산 관리의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한 예산을 2020. 12. 16.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 확정은 기획감사담당관-760호(2021.1.13.)로 통보하였고, 자금없는 이월액 확정은 기획감사담당관-36023호(2021.2.29.)로 통보하였음.

【2020년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의회 승인 (2020.12.16.)			이월사업(명시) 확정통보 (2021.1.13.)		
회계명	건수	이월액	회계명	건수	이월액
계	167	73,372	계	103	58,251
일반회계	155	67,809	일반회계	99	55,921
기타특별회계	12	5,563	기타특별회계	4	2,330

□ 문 제 점

- 2020년 제4회 추경(2020. 12. 16. 의회승인) 예산서에는 의회 승인된 예산 내역과 다르게 예산총칙 제5조(명시이월사업) 및 같은 조에 따른 별첨 명시이월비 사업조서가 누락되었으며, 2021. 4. 13. 현재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0년 제4회 추경내역에도 위와 동일하게 예산총칙 제5조 및 같은 조에 따른 명시이월비 조서가 누락됨
- 이월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자금없는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도 함께 확정 통보하여야 하나, 2회에 나누어 결정 통보함.
- 명시이월의 사업에 있어 의회승인 받은 내역은 167건/73,372백만원, 명시이월 확정내역은 103건/58,251백만원으로 의회승인 받은 내역보다 64건/15,121백만원이 적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조치사항(계획)

- 2020년 4회 추경예산 총칙 및 별첨조서(명시이월사업)를 수정(명시이월 내역과 예산총칙 조항포함)하여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함
- 이월액 및 사업 확정시 자금 없는 이월액도 포함하여 이월 확정 완료
 - 확정일 : 2022. 1. 6.(목) / 자금없는 이월액 506백만원 포함
- 명시이월대상 사업 판단 및 조서작성을 11월에 하고 12월 마무리 추경 시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나 사업비 확정을 익년도 1월 10일 기한으로 하여 조서 작성 시 소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바, 향후 이월 처리 방안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4	검사위원	정진환	소관부서	세정과
제 목	세입예산 편성 소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0회계연도에 징수한 채납처분 공매집행비용 수입(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채납처분수입’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과 차이발생

(단위: 원)

세입예산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고
임시적세외수입	-	-	1,604,760	241,680	
기타수입					
채납처분수입					

□ 문 제 점

- 예산을 집행(세입예산-징수결정일수납, 세출예산-지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채납처분에 대한 공매집행비용을 징수, 수납하는 과정에서 예산내역에 없는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세입처리함
- 세입이나 세출에 있어서 의회승인 후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과목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세입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하였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회계연도 중(1. 1. ~ 12. 31.)에 (세입)예산과목에 없는 금액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과목과 가장 근접한 관항목의 그외수입에 징수결정 및 수납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면 다음 추경에 그외수입을 감액하고 필요한 목을 신설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받기 바람. 다만 다음 추경이 없으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임

조치사항(계획)

-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시 발생한 체납처분비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예산과목으로 예산편성 시 세수체계에 어려움이 있음.
- 2021회계연도 체납처분비 발생 시 본예산 미편성 과목이므로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 후 수납하고, 향후에는 세입예산과목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5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제 목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사업비 산정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세입결산(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세입과목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차 액 (A-B)
순세계잉여금	65,761,452		65,761,452	65,682,428	79,024
전년도이월사업비		94,499,774	94,499,774	95,431,457	△931,683

– 순세계잉여금: 2019회계연도 지방세 물납액(79,024천원) 발생에 따른 차이

– 전년도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A)	징수결정액 (B)	차액(A-B)	비 고
계	3개 사업	33,373	965,056	△931,683	
도 시 과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사업		955,000	△955,000	19년 계속비 이월 시 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확정하여야 하나, 일반 이월로 확정 (자금교부: 20.5.12.)
농업정책과 (현 축산유통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33,373		33,373	19년 명사0월 시 국도비 보조금이 전액 교부되었음에도 '자금없는 이월'로 확정
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사업		10,056	△10,056	19년도 미교부된 국비 10,056천원 20.2.21.추가 교부 ※ 19년 보조금 교부범위 내에서 사업 완료

□ 문 제 점

- 현행 예산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세입처리되지 않은 2019회계연도 지방세 물납(토지) 79,024천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정함

- 전년도이월사업 확정시 자금교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월하였고,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이 교부되었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2020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이 물납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세정과는 향후 지방세 등 물납이 발생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월사업 확정시 자금교부 여부 등을 사업부서와 세입부서의 확인 및 협의를 통하여 ‘자금없는 이월’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정하기 바람
-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비를 조기에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조치사항(계획)

【기획감사담당관】

- 이월액 및 사업 확정시 자금교부 등을 명확히 하여 자금없는 이월액을 명확히 구분·확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 등의 국도비를 포함하여 이월사업을 확정하도록 유의하겠으며 이월조서 작성 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이월사업비산정이 철저하게 처리되도록 개선하겠음
 - 이월조서 작성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 2021. 10. 28.(목)
 - 2022년 세출예산 이월확정(자금없는이월 506백만원) : 2022. 1. 6.(목)

【세정과】

-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이 개정되었기에 관련규정을 면밀히 연찬하여 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도시과】

- 가평읍 시가지활성화사업 계속비 이월시 도비 보조금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확정 하여야 하나, 일반이월로 확정된 사항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축산유통과】

- 이월요구서 등록 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여부 확인 후 ‘이월요구액’ 과
‘자금없는 이월(미교부시)’ 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토록 조치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6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회계과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천원)

기 분	매 출	매입	납부세액	비 고
계	1,953,439	103,967,882	△637,105	면세 2,710,538
1/4기분	989,991	14,834,680	△ 56,408	면세 535,852
2/4기분	439,994	40,277,186	△279,021	면세 337,906
3/4기분	211,246	16,532,811	△ 53,453	면세 774,197
4/4기분	312,208	32,323,205	△248,223	면세 1,062,583

※ 부가가치세 작성 업무 외부기관(세무사사무소, 5,460천원)에 위탁 신고

□ 문 제 점

- 과세관서이며 세정과 및 회계과 등 담당이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 업무를 가평군 업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정확성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함
(부가가치세 과세는 2007년부터 시행됨)

○ 부가가치세 과세분 검토

-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업점·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임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정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동산 사용료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세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숙지하여 해당담당자 책임 하에 신고·납부하기를 권고함(필요에 따라 외부기관에 검토 및 자문)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업무에 적법하게 신고 되었는지를 검토하기를 권고함(종합운동장 및 축구장 사용료 등, 전·답·임야·주택 부수 토지 등 국유재산임대료 등)

조치사항(계획)

- 인사팀에 세무직 배치를 요청하였으나 직렬 현원 부족으로 배치가 불가하여 현 부가가치세 용역 지속
- 읍·면·사업소 각 사업장별 담당자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집합 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교육책자 배부완료

2020회계연도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일련번호	17	검사위원	홍인수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제 목	연도말 기금조성액 관리 철저				

개선 및 권고사항

□ 현 황

(단위: 천원)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 ㉠	기금보관사항		실 조성액(a+b) ㉡	차 액 ㉠-㉡
	예치금(a)	일반회계 융자금(b)		
61,461,504	28,761,650	6,972,000	35,733,650	25,727,854

□ 문 제 점

- 기금은 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회계결산(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의 기금조성총괄표의 연도 말 기금 조성액과 실 조성액이 매년 차이가 발생함
- 기금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없음

□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개요 작성보고서(기금요약)에 실 조성액과 결산서 상의 차이 및 기금 총 조성규모(융자금미회수채권 등)를 별표 및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기하기를 권고함

조치사항(계획)

- 권고사항에 따라 결산개요 작성 시 작성보고서에 실 조성액과 결산서 상의 차이 및 조성규모를 따로 표기하여 결산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음